h·well 국민건강보험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 담당부서 | 요양심사실 | | | | |
|---|---|---|---|---|---|
| 부 장 | 정 근 순 | 033)736-3904 | 배 포 일 | 2020. 7. 8.(수) (총 4매) | |
| 팀 장 | 이 선 영 | 033)736-3959 | 배포부서 | 국민 소통실 | 부장 임영희 팀장 최재우 033)736-1405, 1430 |

##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

**-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현황 ('18) 6명 → ('19) 120명 ('20) 10명 ('20.3.31.기준)

○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었는데,

-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

-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고,
-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되어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고,
- C 요양보호사가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 RFID(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시행 '20.10.1.)

○ 또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행정처분 관련법령
2. 부당청구 가담수급자 행정처분 관련법령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붙임1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관련 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사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법 제69조제1항 제8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 법 제37조의5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붙임2 부당청구 가담수급자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br>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